

인간-AI 공존시대,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인공지능(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요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목적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근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1~'25)(교육혁신과-1834, 2021.2.9.)

개요

- 방침: 학교별 인공지능(AI)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인공지능(AI)의 등급 및 영향 평가 후 도입 여부 결정
※ 학교별 인공지능(AI) 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내 위원회(예: 교육과정위원회 등)를 활용하여 구성
- 업무 처리 절차

단계	내용	담당	비고
1	단위학교 AI 도입 필요 및 수요 발생	학교 업무담당자	
2	AI 프로그램(업체) 자료 조사 및 정리	학교 업무담당자	
3	AI 등급 평가 매트릭스 판별	학교 업무담당자	- 의사결정영향정도 - 개인정보민감정도
4	AI 영향 평가 심의 (체크리스트 점검 및 AI 도입 여부 결정)	교내 또는 학교 AI 위원회	업체 담당자로부터 체크리스트 항목별 내용을 확인받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
5	계약	학교 업무담당자	업체와의 조율 과정에서 논의된 조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서화할 것
6	가정통신문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학교 업무담당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CONTENTS

- 1** 공교육에서 인공지능(AI) 적용 기준
 - 2** 단위학교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 3** 단위학교 인공지능(AI) 영향평가
 - 3-1. 인공지능(AI) 등급 평가 매트릭스
 - 3-2. 인공지능(AI)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 4** 인공지능(AI) 도입 시 유의사항
- 부록** Q&A





추진 배경

-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교육 적용 인공지능(AI)의 관리방안 마련
-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의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 필요
-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의 등급제, 등급에 따라 접근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제한,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투명성/신뢰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본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술과 알고리즘(이하 인공지능(AI))을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적용기준은 인공지능(AI) 사용에 있어 도입 주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영향 평가 기준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주체(이하 도입 주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결정이 서울 시민과 서울시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결정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는 위험성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명성 기준

도입 주체는 인공지능(AI)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AI)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도입 주체는 인공지능(AI)의 주요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평이한 모국어로 문서화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처리과정에 관한 정보를 접근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인공지능(AI)이 학습하거나 수집/이용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저장되며, 보호받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 기준

도입 주체는 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집단을 찾고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하고, 인공지능(AI) 사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의 차별과 편향 기준

도입 주체는 인공지능(AI)이 학습하거나 사용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등에 필요한 목표와 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해당 목표와 한계 내에서 그에 부합되게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감독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도입 주체는 인공지능(AI)에 의한 편향과 차별의 발생가능성에 유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실의 편향과 차별을 확대·강화할 가능성 여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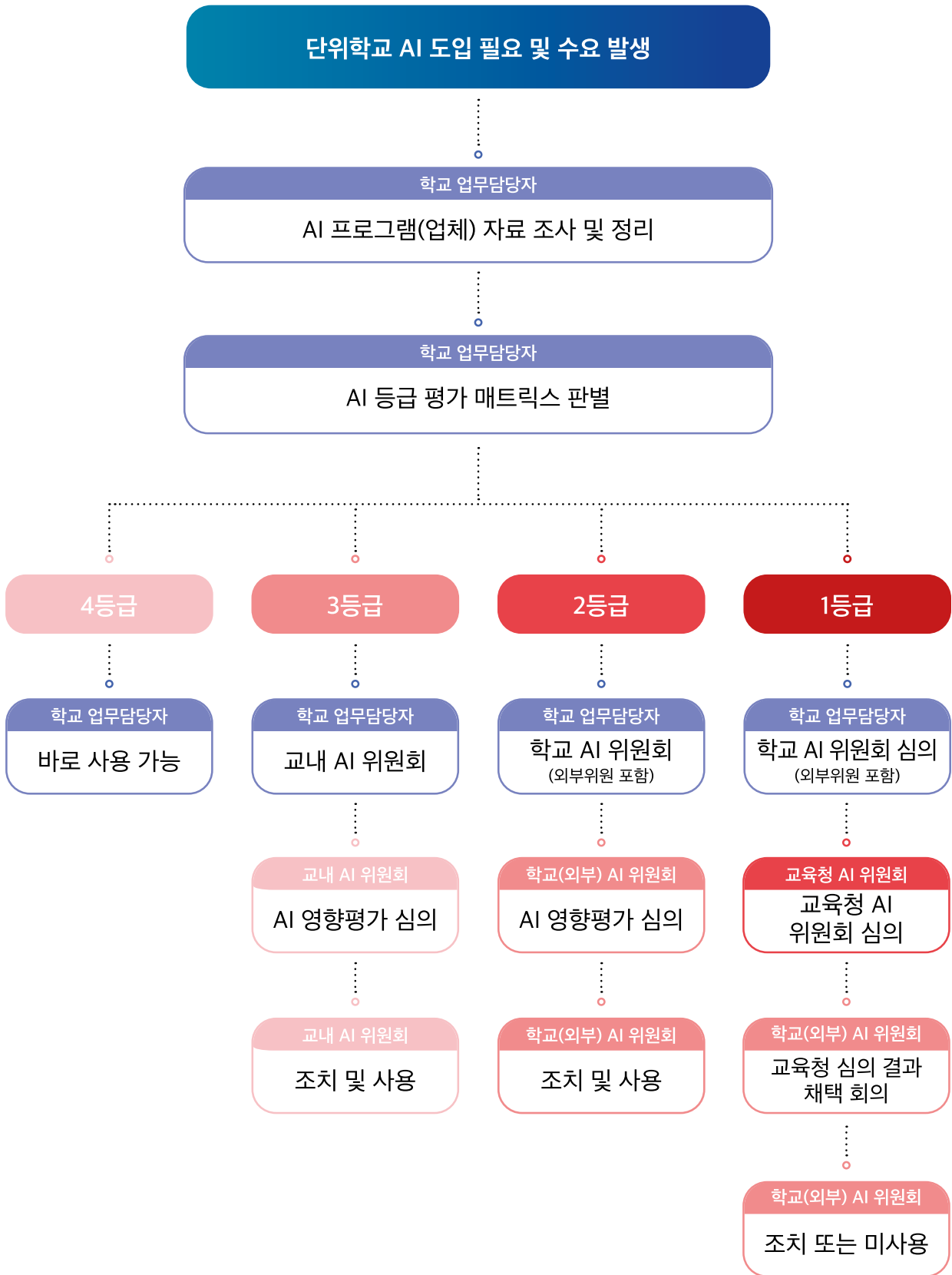
도입 주체는 인공지능(AI)이 학습하거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윤리와 인권의 관점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그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에 의한 관리 감독

도입 주체는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함을 이해하고, 인공지능(AI)의 통제와 감독을 위한 인간 담당자를 지명하며, 인공지능(AI)에 의한 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인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단위학교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3

단위학교 인공지능(AI) 영향평가

3-1. 인공지능(AI) 등급 평가 매트릭스

학교에서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사결정 영향 정도와 개인정보 민감 정도를 반영하여 인공지능(AI) 등급을 평가



- 학교 구성원 : 학생, 교직원, 학부모
- 영향 및 민감 정도가 여러 유형에 해당될 경우 가장 중대성이 높은 기준을 따름

3

단위학교 인공지능(AI) 영향평가

[참고1] 인공지능(AI) 등급 평가 매트릭스 판별 도움 자료

의사결정 영향 정도



의사결정 영향 정도

학교 구성원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음	학생/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및 진학 추천 - 진로·진학 관련 학생 진단 및 평가 - 진로·진학 관련 각종 지원 및 혜택 제공 여부 - 교내·외 행사, 대회 등 참여 기회 제공 여부 	높음
	교직원	교직원 업무 능력 진단 및 평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음	학생/학부모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을 위한 진단 및 평가 - 교수·학습을 위한 상담 활동 제공 여부 - 교육활동 선택 : 학생참여형 수업 및 동아리 활동 등 - 추가 교육활동 지원: 개별 보충, 방과후활동 등 시행 여부 	중간
	교직원	교육행정 업무 수행 지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학생	웹기반 머신러닝 툴 활용 수업 ※ 쿼드로우, 네이버 및 다음 포털의 꽃검색 등	낮음

[참고2] 인공지능(AI) 등급 평가 매트릭스 판별 도움 자료

개인정보 민감 정도



개인정보 민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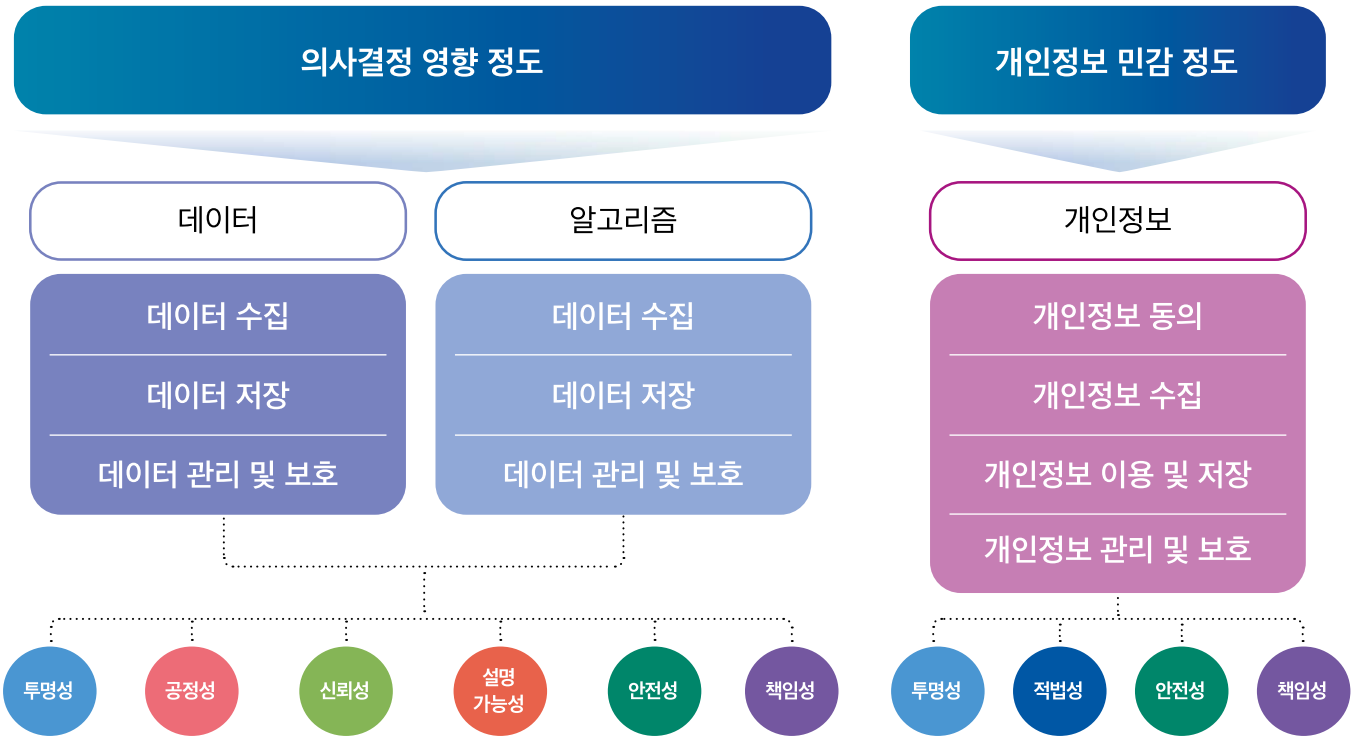
낮음	중간	높음
<p>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정보</p> <p><자동 생성 정보> 사이트방문기록, IP주소, 쿠키 등</p>	<p>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p> <p><직접 식별 정보> 성명, 영상 <간접 식별 정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 일반 정보> 학력, 직업, 키, 몸무게, 가족사항, 취미 등 <교육 활동 정보> 수업이수내역, 수상내역, 교과상담내용 등</p>	<p>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p> <p><고유 식별 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 정보> 사상·신념, 건강·장애, 유전정보, 얼굴인식 등 바이오정보, 인종·민족 정보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 <위치 정보> GPS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기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교육 활동 정보> 성적(학업성취도), 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내용, 심리상담내용 등</p>
<p>【관계법령 의무】 자동 생성 정보의 수집·이용시 동의</p>	<p>【관계법령 의무】 일반 동의 (위반시 과태료) 【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요약)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p>	<p>【관계법령 의무】 별도 동의 (일부위반시 형사처벌) 【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요약)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 동의에 따른 처리는 불가능함</p>

3

단위학교 인공지능(AI) 영향평가

3-2. 인공지능(AI)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개요]



인공지능(AI)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7대 원칙

1	투명성	개인정보 및 데이터(이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의 내역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공개한다.
2	공정성	데이터 처리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여 사회적 차별·편향 등 발생을 최소화한다.
3	신뢰성	데이터 처리 및 알고리즘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4	설명가능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 및 편향에 대해 설명 가능해야 한다.
5	안전성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한다.
6	책임성	데이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7	적법성	데이터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의 근거는 적법·명확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요인	항목	내용	YES	NO	해당 없음
일반		[기획/설계] 인공지능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적 이슈 및 사회적 편향·차별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였는가?			
		[관리/보호] 인공지능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가?			
		[관리/보호]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문서화 된 절차를 두고 있는가?			
의사결정 영향정도	데이터	[데이터 품질 관리-사후] 운용단계에서 편향성 및 기타 예상치 못한 결과물에 대해 데이터셋을 검사하는 절차를 보장하는가?			
		[데이터 관리/보호- 공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저장, 보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데이터 관리/보호] 수집/발생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알고리즘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는가?			
		[AI 결과물-의사결정 영향] AI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선택권을 제공하는가?			
		[AI 결과물-의사결정 영향] AI 의사결정이 일시적인가?			
개인정보 민감정도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5.31)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는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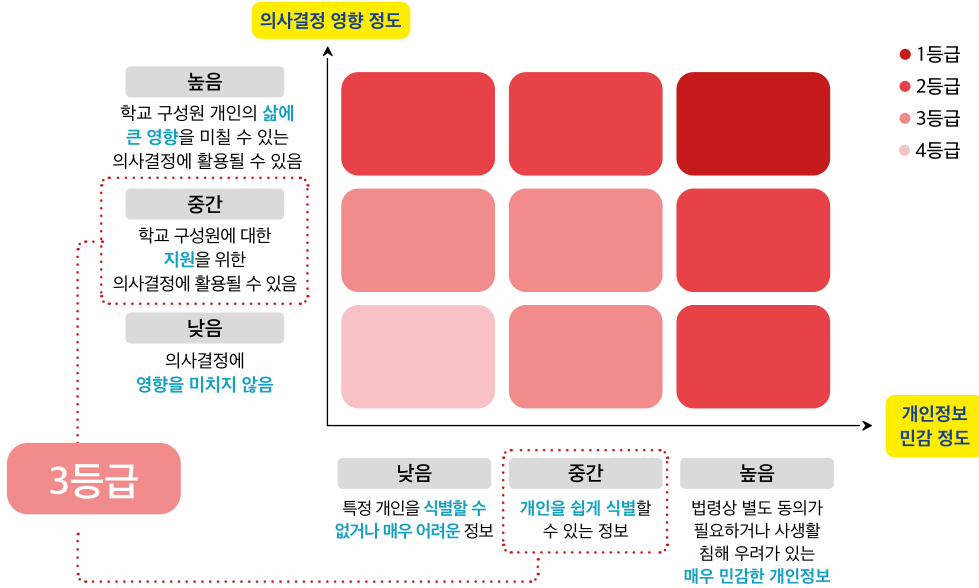
인공지능(AI) 도입 시 유의사항

- 인공지능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는 인공지능 등급 평가 후 인공지능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점검 목적으로 제공함
- 교내(또는 학교) AI 위원회에서 심의 시 업체 담당자로부터 체크리스트 항목별 내용을 확인 받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업체와 조율을 통해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
- 업체와의 조율과정에서 논의된 조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서화할 것을 권장
- 인공지능(AI) 도입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에는 교내(또는 학교) AI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일괄 안내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예: 초등 똑똑 수학탐험대, 초등 영어 AI펍톡, LG CNS AI튜터 미션 잉글리시 등)은 학교에서 별도의 등급 및 영향평가 없이 바로 사용 가능

예시 1 LG CNS 스피킹 클래스 시뮬러

1. 인공지능 등급 평가 매트릭스 적용

- 1-1. 의사결정 영향 정도 평가: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 중간
- 1-2. 개인정보 민감 정도 평가: 학생 이름, 이메일주소 입력 ⇒ 중간



2. 인공지능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적용

요인	항목	내용	YES	NO	해당 없음
의사결정 영향정도	일반	[기획/설계] 인공지능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적 이슈 및 사회적 편향·차별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였는가?	✓		
		[관리/보호] 인공지능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가?	✓		
		[관리/보호]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문서화 된 절차를 두고 있는가?	✓		
	데이터	[데이터 품질 관리-사후] 운영단계에서 편향성 및 기타 예상치 못한 결과물에 대해 데이터셋을 검사하는 절차를 보장하는가?	✓		
		[데이터 관리/보호- 공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저장, 보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		
		[데이터 관리/보호] 수집/발생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		
알고리즘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는가?	✓			
	[AI 결과물-의사결정 영향] AI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선택권을 제공하는가?	✓			
	[AI 결과물-의사결정 영향] AI 의사결정이 일시적인가?	✓			
개인정보 민감정도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5.31)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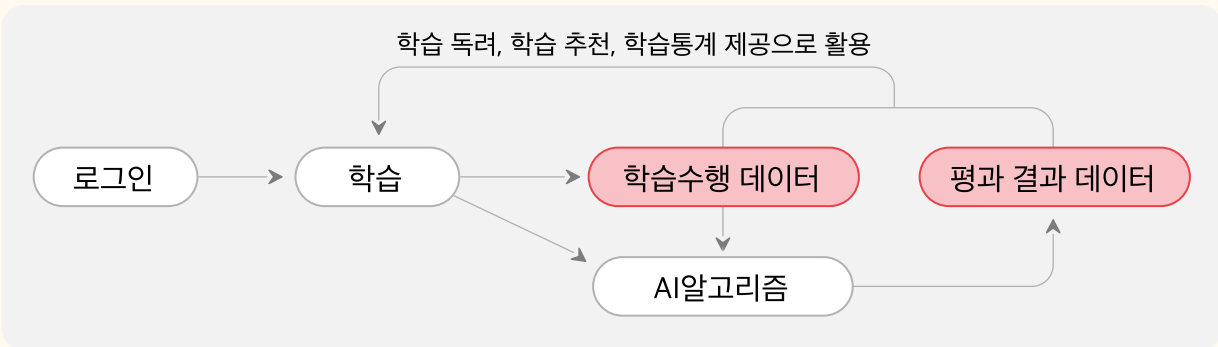
3. [추가 확인 자료] AI 튜터의 데이터 관리 방안

※ 체크리스트 내용 중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권장

[별첨2. “AI튜터링 학습자 데이터 처리방안”]

제 1조 (학습자 데이터 활용방안)

① “LG CNS”는 학습자의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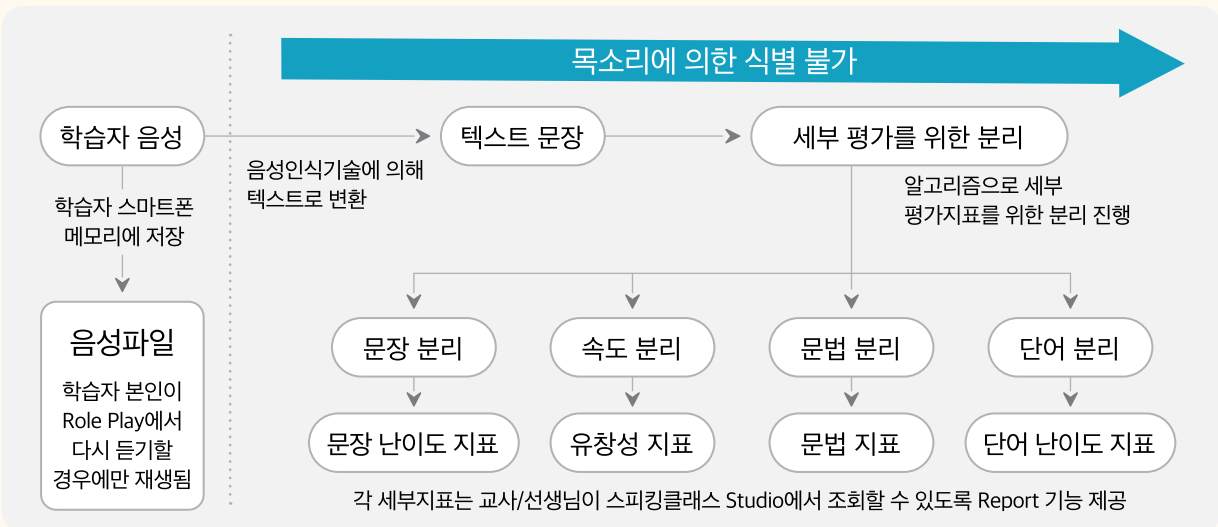


제 2조 (장기간 서비스 미 이용자 정보 파기 또는 분리 보관)

- ① 관련 법률에 따라 장기(1년) 미사용 개인정보는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한다.
- ② 기한 도래 1개월 전(11개월간 미사용 고객) SMS, 이메일 등의 유효한 수단으로 파기 또는 분리 보관 예정사실, 개인정보 항목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4. [추가 확인 자료] AI 튜터의 알고리즘 처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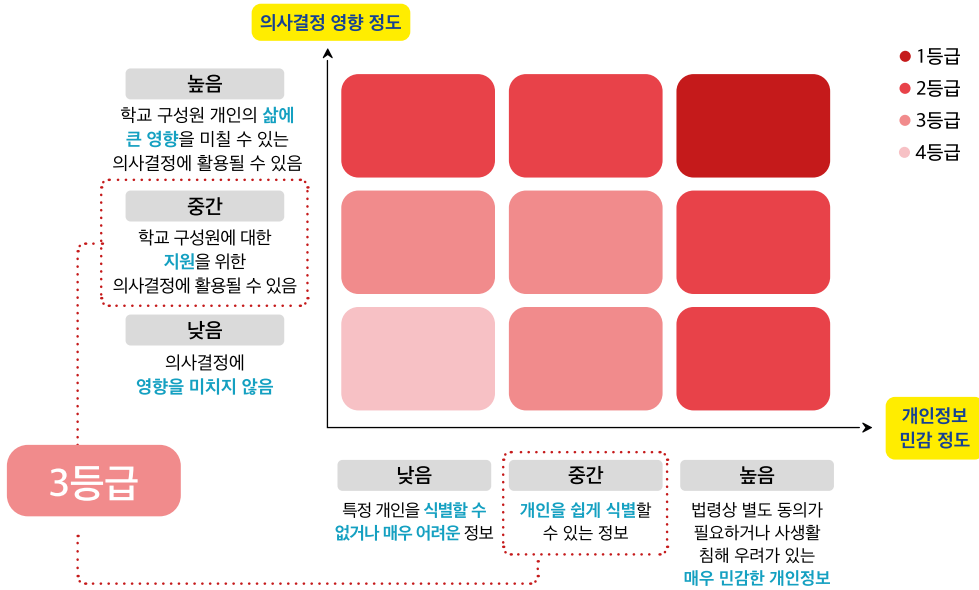
제 3조 (AI알고리즘 처리방안)



예시 2 교육부 시평록

1. 인공지능 등급 평가 매트릭스 적용

- 1-1. 의사결정 영향 정도 평가: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 중간
- 1-2. 개인정보 민감 정도 평가: 학생의 학교, 학년, 닉네임 입력 ⇒ 중간



2. 인공지능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적용

요인	항목	내용	YES	NO	해당 없음
의사결정 영향정도	일반	[기획/설계] 인공지능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적 이슈 및 사회적 편향·차별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였는가?	✓		
		[관리/보호] 인공지능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가?	✓		
		[관리/보호]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문서화 된 절차를 두고 있는가?	✓		
	데이터	[데이터 품질 관리-사후] 운영단계에서 편향성 및 기타 예상치 못한 결과물에 대해 데이터셋을 검사하는 절차를 보장하는가?	✓		
		[데이터 관리/보호- 공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저장, 보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		
		[데이터 관리/보호] 수집/발생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		
알고리즘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는가?	✓			
	[AI 결과물-의사결정 영향] AI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선택권을 제공하는가?	✓			
	[AI 결과물-의사결정 영향] AI 의사결정이 일시적인가?	✓			
개인정보 민감정도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5.31)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는가?	✓		

3. (추가 확인 자료) AI 튜터의 데이터 관리 방안

※ 체크리스트 내용 중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권장

AI펍톡 수집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리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보완 : 2021년 1월 ~ 2월 수행 완료
- 모의해킹* 수행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검증
모의해킹 수행 및 수정보완 : 2021년 1월 ~ 2월 수행 완료
- 수집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는 NHN Cloud*에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허가된 사용자만 DB에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통제 체계를 통해 관리

* NHN Cloud 보안인증 체계

- ISPM-P(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 ISO/IEC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획득
- ISO/IEC 27701(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획득
- ISO/IEC 29100(개인정보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 표준) 획득
- ISO/IEC 27017(클라우드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획득
- ISO/IEC 27018(클라우드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획득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획득
- CSA STAR(미국 CSA(Cloud Security Alliance) 주관 국제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 보호 인증)

** DB(DataBase)는 DB-Safer 설치를 통한 보안관리를 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 방식은 RSA-256와 AES-256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Q1.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이란?

답변 |

- 학교의 교육활동 및 시설관리 등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을 의미함. 예를 들면, 웹기반 머신러닝 툴(구글 티처블 머신, 퀵드로우 등), AI 튜터, AI 스피커, AI 챗봇 등 교육활동에 활용되는 것과 출입통제 등 학교 시설 관리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을 의미함.

Q2.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이란?

답변 |

- 공교육에 적용되는 AI가 갖추어야 할 공공성이란 학생의 개인 정보를 비롯한 민감 정보들이 법령과 윤리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고, 데이터 처리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고 설명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함.
-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자료의 데이터화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학생의 학습 활동과 관련한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수집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며, 언제까지 보관할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충분한 숙의 과정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입법화가 필요한 문제임.

Q3. 학교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경우, 현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공지능 영향평가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

답변 |

-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경우, 모두 현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평가를 할 것을 권장함.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내용들이 법제화된 것이 아니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
- 이미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평가를 했는데,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조율할 것을 권장함.

Q4. 교육청에서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을 영향평가 한 후 단위학교에 안내할 수는 없는가?

답변 |

- 교육청에서 학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영향평가 후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학교마다 도입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학교의 특성과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신해서 영향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학교가 도입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현장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추진하고, 등급 평가 결과 1등급이 나온 경우만 교육청에 의뢰하여 완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장함.

Q5.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활용 방안은?

답변 |

- 인공지능 등급평가 매트릭스로 인공지능의 등급을 평가한 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위한 자료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AI 도입을 위한 심의 단계에서 업체 담당자로부터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확인받고, AI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근거 서류로 활용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의 10개 항목에서 모두 'Yes' 로 나온 경우에는 바로 도입할 수 있고, 일부는 'Yes', 일부는 'No'로 나온 경우에도 교내 또는 학교 AI 위원회에서 업체와 조율하여 적절한 조치 후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도입이 가능함.

Q6.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체크리스트의 점검 내용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

- 학교는 AI 도입 과정에서 데이터의 관리 방안에 대해 업체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고 계약 시 문서화할 것을 권장함.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에 대해 인공지능 플랫폼 등 물리적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장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목적이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공공성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동시에 학교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도 공공성을 전제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따라서 학교는 기업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을 추진하되, 계약 시 제반사항에 대해 문서화하여 안전하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것임.

Q7. 업무처리절차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업무담당은 누구이고, 교내 AI위원회와 학교(외부) AI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답변 |

- 학교에서 도입하는 AI의 활용 방법에 따라 학교업무담당자는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수학 교과에서 AI 튜터를 도입한다면 학교업무담당은 수학과 교사 또는 기초학력 담당자가 되어야 할 것임.

- 교내 AI위원회와 학교(외부) AI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내 위원회를 활용할 것을 권장함.
(예를 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소위원회 형태로 구성)

다만, 학교(외부) AI위원회의 경우, 교내 AI위원회에 AI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권장함.

예시 |

- 교내 AI위원회: 위원장 1명, 업무담당부장, 업무담당교사, 관련 교과담당교사 등
- 학교 AI위원회: 교내 AI위원회, AI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Q8. 인공지능 등급 평가 결과 1등급으로 판정되어 교육청 AI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의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

- 학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AI에 대한 교육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청이 적절한 조치사항을 안내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학교 AI위원회가 해당 업체와 조율하여 위험성을 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